Office of Communications

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

USCIS 업데이트

2009 년 11 월 30 일

USCIS는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 내 특정 외국인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를 시행할 예정이다.

워싱턴의 미연방 국적 및 이민국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, USCIS)은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 (CNMI) 내 특정 외국인 그룹에게 임시 입국 허가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. 해당 집단은 CNMI 영주권자, 영주권자의 직계가족, 및 자유 연합 국가 (팔라우 공화국, 미크로네시아 연방, 마샬 군도 공화국)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다. USCIS 는 이 시행령을 이민 및 국적 법령 조항 212(d) 5 에 의거하여 시행된다.

2008 년 자연자원 강화법(*Consolidated Natural Resources Act of 2008,* CNRA)에 의하여 미국 이민법 조항 대부분을 2009 년 11 월 28 일부터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으로 확대 적용한다. 이 날짜로부터, CNMI 내 외국인은 미연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되며 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. 2009 년 11 월 28 일부터, CNMI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노동 허가권한을 2 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. CNRA 는 CNMI 에 거주하는 일부 집단에게 미국 이민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,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CNMI 에 미치는 부정적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CNMI 의 장래 경제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. 이 허가권을 시행함에 있어서 USCIS 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, 미 법률 적용 시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개인을 CNMI 로부터 추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방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미 의회의 의지를 실효화하고자 노력한다.
임시 입국 허가 시행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. 임시 입국 허가는 CNMI 의 집단 구성원들이 미국 이민법 상 합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며 고용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. 임시 입국 허가 지위는 또한 CNMI 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임시 무비자 출입국 허가 (advance parole)를 발행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괌 및 다른 영토를 포함하여, 미국의 다른 곳으로의 여행은 승인되지 않으며, USCIS 와 관세 및 국경 보호국 (Customs and border Protection, CBP)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임시 무비자 출입국 허가는 CNMI 로 입국할 경우에만 유효하다.

– USCIS –